

번호 06-5

제 목	국문	환경분쟁조정사례 중 신체 및 건강피해분쟁사례에 관한 고찰			
	영문	Researches for Body and Health Damage Dispute Cases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ases.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경환, 장 옥 ¹⁾ , 김소윤 ²⁾ , 손명세 ²⁾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과, 연세대 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¹⁾ ,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²⁾			
	영문	Kyung Hwan Lee, Wook Jang ¹⁾ , Soh Yoon Kim ²⁾ , Myongsei Sohn ²⁾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¹⁾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Medical Collage of Yonsei University ²⁾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이후 고도 경제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시간, 비용의 관점에서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그래서 보다 간이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요망된다. 또한 과거에는 환경분쟁이 재산적 피해부분에 집중되어 왔으나 국민의 건강권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감에 따라 인체건강에 관한 피해분쟁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분쟁조정사례들에 나타난 신체적·정신적 피해부분에 있어서의 조정도출과정 및 피해배상 정도에 대해 조정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여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p> <p>2. 연구 방법</p> <p>92년부터 98년까지 환경분쟁조정사례들 중 신체·건강에 관한 피해사례들을 분석하여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 인과관계 판단기준, 배상요구액에 대한 배상액의 정도 그리고 연도별 승복율의 추이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조정을 하기 위해 사용된 조사방법 및 조정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인적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조정에 불복해서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소송결과와 조정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p> <p>3. 연구 결과</p> <p>환경분쟁조정사례들에 나타난 신체·건강 피해의 유형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재산적 손해는 신체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들어간 적극적 손해와 신체적 피해를 입음으로 잃게된 일실수입인 소극적 손해가 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서 지불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염원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초기 조정사례들에서는 인정하는 예가 많지 않았으나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p> <p>첫째, 조정에 대체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내외로서 빠른 시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오염원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사단을 파견하여 분쟁지역의 현지조사를 하고 오염원 및 피해유형에 관련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인과관계 입증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 피해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 초과여부이다.</p>					

셋째, 배상요구액에 대한 배상액의 일반적 비율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10%내외에서 배상액이 결정된다. 또 정신적 손해의 경우 이격거리나, 노약자등과 같은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배상액 산정에 고려하고 있다.

넷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91년 이후부터 98년까지 조정한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평균 승복율은 75%이며 92년도 승복율 25%에서 연도별로 승복율이 상승하여 97년도 승복율은 89%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조정신청 후 사건현장 조사 및 면담등을 통하여 조정 및 재정회의를 통한 배상결정이 있기 이전에 심사관의 의견절충 등을 통하여 배상결정전에 당사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사건을 철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4.고찰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분쟁조정제도들이 있지만 그 중 환경분쟁조정제도가 가장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판단기관인 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조정제도는 소송과는 달리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양당사자간에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원인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며 이에 따른 건강피해 사례도 확대되어갈 것이라는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입증 및 배상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보다 과학기술적 학문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조정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화하여 조정결정이 양당사자에게 공정한 결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할 것이 요망된다.

또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성공요인들을 검토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료소송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제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